

울산지방법원 2021. 3. 19 선고 2020가단123279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

대한민국

피고, (피)

항소인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3. 19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1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